

## 이안 센트럴포레 장유 1단지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각 기관별 추천 기준에 따른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보된 대상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신청 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여부 · 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 공급개요 및 일정

-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삼문동 903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지하3층, 지상14 ~ 24층 10개동 총 아파트 756세대 중 일반공급 7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1년 11월 19일 예정(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예정일 : 2023년 3월 31일(사업계획변경승인에 따라 변경예정)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단위 : m<sup>2</sup>,세대)

구분	주택형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m <sup>2</sup> )			배정세대수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민영 주택	59A	35	59.9814	20.1932	80.1746	3
	59B	13	59.9616	19.2261	79.1877	1
	59C	10	59.9365	18.9201	78.8566	1
	84	21	84.9638	25.2677	110.2315	2
<b>합계</b>		<b>79</b>				<b>7</b>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공급 세대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관추천 유형별 배정세대 내역 (내역은 분양승인시 해당관청의 승인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위 : 세대)

구분 타입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합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59A			1		1	1			1		3	1
59B							1				1	
59C	1										1	
84					1	1			1		2	1
<b>합계</b>	<b>1</b>	<b>0</b>	<b>1</b>	<b>0</b>	<b>2</b>	<b>2</b>	<b>1</b>	<b>0</b>	<b>2</b>	<b>0</b>	<b>7</b>	<b>2</b>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함.

※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 배정된 세대수(예비추천자포함)까지 가능하며,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기관의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르며, 예비자 추천 시 순번을 선정하여 송부 요망.

■ 분양일정(예정사항으로서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일자	참고사항
입주자모집공고		2021. 11. 19. (금)	이안 센트럴포레 장유 홈페이지 (http://iaanjy.com)
견본주택 개관		2021. 11. 19. (금)	경상남도 김해시 계동로 225 코로나19 사태 등 관련하여 개관 일정 및 관람의 방법은 미정임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특별공급 접수일시	인터넷청약	2021. 11. 29. (월) 09:00 ~ 17:30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통한 청약 접수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동시 발표)		2021. 12. 07. (화)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조회가능

- ※ 상기일정은 업무추진 중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 ※ 정부 방침에 따라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 인터넷 청약접수 마감시간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 접수중이라도 접수가 종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단, 인터넷 청약접수 마감시간과 상이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은행창구 접수 불가)], 방문시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자로 선정되신 분들도 특별공급 접수일에 반드시 청약신청 하셔야 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선정 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 등

- ◆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 유의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동일주택에 한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당첨 시 특별공급을 당첨으로 간주합니다.
- 동일세대에서 특별공급 중복청약으로 동시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하고, 동일주택에 동일인이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등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 제외) /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속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소형 · 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당첨자로 봅니다.(1회 특별공급 간주)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가구 수 및 대상자(예비자 포함)를 확정하고 특별공급 접수일

전에 동 대상자(예비자 포함)를 한국감정원에 명단을 통지합니다.

- 기관추천 대상자도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됩니다.
- 기관추천 대상자가 청약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세대는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기관 예비자 포함)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일반공급 동시에 예비자로 선정된 경우
  - 특별공급을 우선 배정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배정 시 일반예비 지위는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 예비를 포기하고 일반공급 예비자 선택이 불가합니다.
  - 다만, 특별공급 예비자가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 기회가 상실된 경우 일반 예비순번 지위 인정
- 당첨자 발표는 일반공급 발표일에 동시 발표됩니다.
- 공급금액, 해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당사 견본주택 등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 ◆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1.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2.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 및 분양권 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 ◆ 청약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적용)
  -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은 제외
- ① 청약예금 :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

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구 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각호에 해당 하는 자 중 각 해당 기관의 특별공급별 추천을 받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추천기관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부산지방보훈청 울산보훈청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경남동부보훈청 경남서부보훈청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소기업청 부산지방청,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 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울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경남도청 장애인복지과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단, 국가유공자 등 및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는 청약통장가입에서 제외됩니다.

◆ 당첨자선정방법

-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 합니다.(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특별공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시 주택형 변경 불가,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예비 포함) 및 동·호수 배정은 청약홈에서 전산추첨 합니다.
-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기관추천, 신혼부부 등 유형별 구분 없이 특별공급 배정량의 40%를 선정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이안 센트럴포레 장유 분양사무실 (☎055-902-07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특별공급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자모집공고시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필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 및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기관추천 대상자 양식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내역 / 추천 리스트(장애인)

■ 추천양식(대상자)

주택형	형별순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폰)	비 고
59C	1					

※ 예비추천자 배정물량(40%)을 대상자와 구분하여 회신 바랍니다.

※ 예비추천자는 배정물량이 없어 별도 회신은 필요 없습니다.